

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시 보

제2528호

2026년 6월 26일 (금)

차 례

조례 · 규칙

- 파주시 조례 제2414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파주시 조례 제2415호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파주시 규칙 제82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 파주시 규칙 제827호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9

훈령 · 예규

- 파주시 훈령 제323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21

고시 · 공고

- 파주시 고시 제2026-254호 파주시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고시 24
- 파주시 고시 제2026-262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26
- 파주시 고시 제2026-263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운정건강공원(제1호체육공원)]
결정(변경) 고시 27
- 파주시 고시 제2026-264호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31
- 파주시 공고 제2026-1879호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51

회 람									
--------	--	--	--	--	--	--	--	--	--

발 행 : 파 주 시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6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김 경 일 인

2026년 6월 26일

파주시 조례 제2414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환경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AI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예산재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민생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산업위원회

가. 도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환경위원회

가.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의2제3항 중 “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

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 940-8321
입안자	이진아 의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자치행정위원회</u> 가. <u>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예산재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민생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자치행정위원회</u> 가. <u>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라. <u>AI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u>예산재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민생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사.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아.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자.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카.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에 속하는 사항

3. 도시산업위원회

가. 도로교통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라.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
항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바.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에

사.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아.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자.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자
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3. 도시산업위원회

가. 도로교통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라.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도

속하는 사항

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에 속하는 사항

<신 설>

③ (생 략)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삭 제>

<삭 제>

4. 문화환경위원회

가.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나.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
항

다.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마.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바. 파주도시공사 사무 중 문
화환경위원회 소관에 속하
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u> ④ · ⑤ (생략)	<u>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개정이유

-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추가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환경위원회 신설 및 위원 정수 규정 마련(제2조)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규정 정비(제3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정비(제7조의2)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26년 제6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김 경 일 인

2026년 6월 26일

파주시 조례 제2415호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 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제5조와 제4조로 하며, 제5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 본문 중 “과주시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 940-8311
입안자	이진아 의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u>	<u>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생략)	제2조(직무) 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두되, 그 구체	제4조(전문위원) (현행 제5조와 같음)

적인 배치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

제5조(전문위원) (생략)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
장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는 따로 과주시 규칙으로 정한
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행규칙) -----

----규칙-----.

□ 개정이유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전면 정비함에 따라, 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체계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사무기구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제명 변경(제명)
- 목적 조항 약칭 및 분장사무 내용 삭제(제1조)
- 조직체계에 따라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조항 순서 변경(제4조, 제5조)
- 사무분장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제5조)

2026년 제5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김 경 일 인

2026년 6월 26일

파주시 규칙 제82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표시한다”를 “표시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6,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 940-8604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연 경
	조 직 팀 장	안 현 정
	담 당 자	박 장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종별 · 직급별 · 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 직종별 · 직급별 ·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u>표시한다</u> .	제5조(직종별 · 직급별 · 직렬별 정원) ① ----- ----- ----- ----- -----. ----- ----- <u>표시하고, 의료 ·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 직급·직렬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업무 전담 정원 별도 표기(제5조)
-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의 장(담당관 및 과장 포함) 및 사업소장의 직급 변경(별표1, 별표3)
- 부서별 사무분장표 변경(별표6)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별표7)

2026년 제5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김 경 일 인

2026년 6월 26일

파주시 규칙 제827호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 940-8605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연 경
	조 직 팀 장	안 현 정
	담 당 자	전 병 언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명확한 업무 구분과 전결 권한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책임행정을 위해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함 (별표 1 ~ 별표 14)
 - 단위사무 신설: 142건
 - 단위사무 폐지: 275건
 - 단위사무 변경: 141건
 - 조직개편: 81건
 - 전결권 조정: 45건
 - 단위사무 변경 및 전결권 조정: 15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파 주 시 장 김 경 일 인

2026년 6월 26일

파주시 훈령 제323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4,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 940-8604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연 경
	조 직 팀 장	안 현 정
	담 당 자	박 장 호

☐ 개정이유

-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별표 1, 별표 3, 별표4, 별표 6)

파주시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금연거리)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파 주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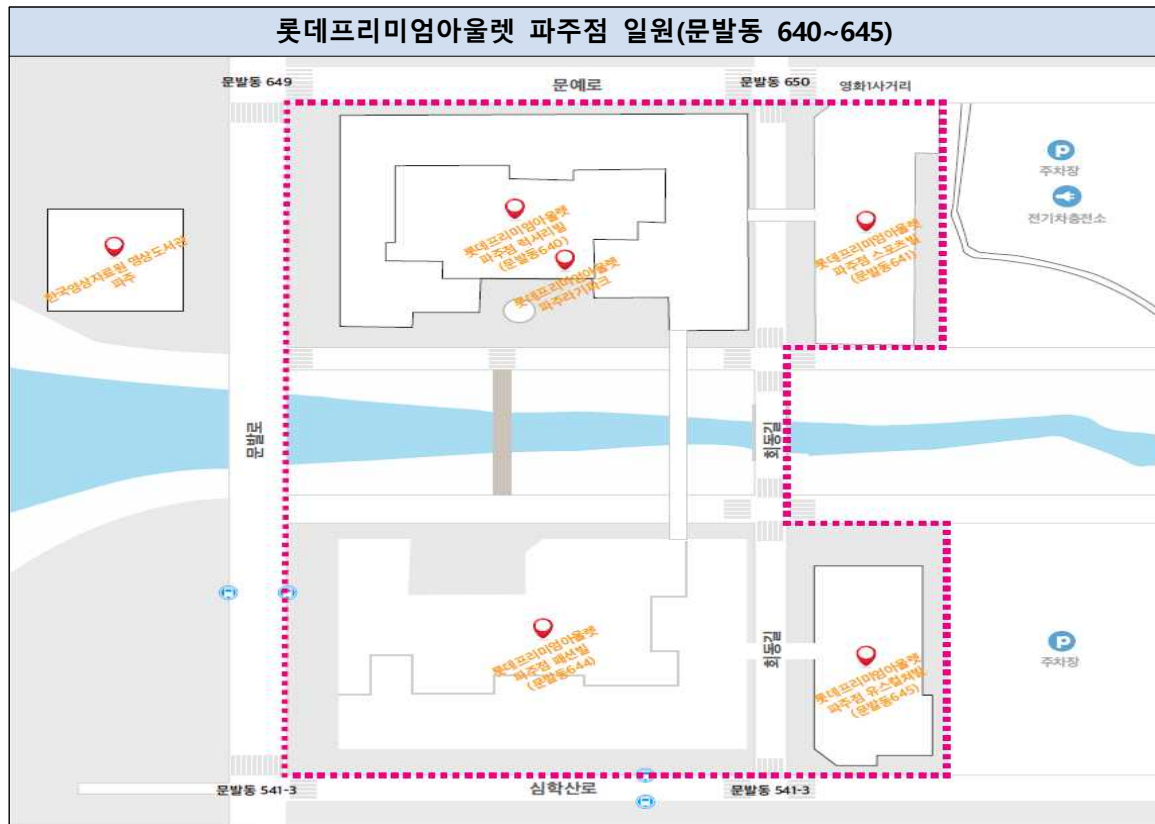
1. 고 시 명: 파주시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고시
2. 지정목적: 대규모 복합 쇼핑시설인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의 건물 간 이동로에 해당하는 외부 보행로를 금연구역(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지정내용
 - 가. 지정구역: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일원(문발동 640~645) ※ [붙임] 참조
 - 나. 지정일자: 2026. 6. 26.
 - 다. 계도기간: 2026. 6. 26. ~ 2026. 9. 25. / 3개월간
 - 라. 과 태 료
 - 1) 부과대상: 금연구역(금연거리)에서의 흡연행위
 - 2) 부과일자: 2026. 9. 26.부터
 - 3) 부과금액: 5만원
4. 고시방법: 파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운정보건소 건강100세팀(☎031-820-7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금연거리) 지정 위치도

□ 기존 금연구역: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4개 동(문발동 640~645)

□ 확대 지정구역: 건물 4개 동 주변 대지 및 건물 간 이동로 등

※ 아래 위치도 상 적색 테두리 표시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3,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성토)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6일

파주시장

1. 고시취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읍리 271-1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4에 따라 “사고지(불법성토)로 등재함.

2. 사고지 조서(지역·지구 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구분	명칭	위치	지목	면적(㎡)	비고
1	사고지 (불법성토)	적성면 구읍리 271-1	답	2,975	농지불법성토
2		적성면 구읍리 293	답	988	
3		적성면 구읍리 271-3	답	4,264	

3.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4.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원상복구 완료시

5.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 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

파주시 고시 제2026 - 263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운정건강공원(제1호체육공원)] 결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47호(2004. 12. 30.)로 최초 결정 된 파주시 동패동 1800번지일원 운정 건강공원(제1호체육공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6. 6. 26.

파 주 시 장

1. 결정취지

- 공원 내 이용 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게이트볼장을 변경·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운정건강공원 (제1호 체육공원)	체육공원	파주시 동패동 1800번지 외 2필지	142,200.9	-	142,200.9	건교부고시 제2004-447호 (2004.12.30.)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공 원 명	결정(변경)내용	(변경)결정사유
운정건강공원 (제1호 체육공원)	· 공원면적 : 142,200.9㎡(변경없음) · 시설면적 : 증60㎡ 당초)68,036㎡ → 변경)68,096㎡ · 녹지면적 : 감60㎡ 당초)74,164.9㎡ → 변경)74,104.9㎡ · 건축면적 : 증448.8㎡ 당초)2,877.79㎡ → 변경)3,326.59㎡	· 공원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정비(게이트볼장 개보수)

- 공원 조성계획(변경)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면 적	142,200.9	142,200.9	2,877.79	3,326.59	3,247.99	3,696.79	
시 설 면 적	68,036	68,096	2,877.79	3,326.59	3,247.99	3,696.79	
도로 또는 광장	23,898	23,898	-	-	-	-	
조경시설	86	86	-	-	-	-	
운동시설	31,946	32,006	1,771.88	2,220.68	2,489.46	2,938.26	
교양시설	9,504	9,504	991.37	991.37	646.99	646.99	
편익시설	2,549	2,549	81.54	81.54	81.54	81.54	
관리시설	53.0	53.0	33.00	33.00	30.00	30.00	
녹지및기타	74,164.9	74,104.9	-	-	-	-	

○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면 적			142,200.9	142,200.9	2,877.79	3,326.59	3,247.99	3,696.79	
시 설 소 계			68,036	68,096	2,877.79	3,326.59	3,247.99	3,696.79	증 60㎡
도로 또는 광장	소 계		23,898	23,898	-	-	-	-	
	도로(소계)		15,050	15,050	-	-	-	-	
	광장(소계)		8,848	8,848	-	-	-	-	
	1	광장 1	599	599	-	-	-	-	
	2	광장 2	993	993	-	-	-	-	
	3	광장 3	1,640	1,640	-	-	-	-	
	4	광장 4	2,249	2,249	-	-	-	-	
	5	광장 5	156	156	-	-	-	-	
	6	광장 6	1,030	1,030	-	-	-	-	
	7	광장 7	594	594	-	-	-	-	
	8	광장 8	525	525	-	-	-	-	
9	광장 9	1,062	1,062	-	-	-	-		
조경 시설	소계		86	86	-	-	-	-	
	A	파고라	-	-	-	-	-	-	12개소
	B	플랜터	-	-	-	-	-	-	8개소
	C	가벽	-	-	-	-	-	-	3개소
	D	벽천	86	86	-	-	-	-	1개소
	E	수목보호석	-	-	-	-	-	-	97개소
휴양 시설	소계		-	-	-	-	-	-	
	F	벤치(일반형)	-	-	-	-	-	-	12개소
	G	평벤치	-	-	-	-	-	-	6개소
	H	등벤치	-	-	-	-	-	-	3개소
	I	평의자	-	-	-	-	-	-	8개소
	J	등의자	-	-	-	-	-	-	60개소
	K	통석의자	-	-	-	-	-	-	11개소
	L	조형평상	-	-	-	-	-	-	2개소
	M	파크스테이션	-	-	-	-	-	-	1개소
	N	가제보	-	-	-	-	-	-	1개소

구 분	도 면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 동 시 설	소 계		31,946	32,006	1,771.88	2,220.68	2,489.46	2,938.26	증 60㎡
	b	배드민턴장	140	140	-	-	-	-	1면
	c	게이트볼장	788	848	-	448.80	-	448.80	2면
	d	테니스장	2,904	2,904	72.00	72.00	72.00	72.00	4면
	e	풋살경기장	600	600	-	-	-	-	1면
	f	다목적구장	15,540	15,540	-	-	-	-	1면
	g	체력단련장	850	850	-	-	-	-	5면
	h	X-Game장	1,439	1,439	-	-	-	-	1면
	i	인공암벽장	361	361	-	-	-	-	3면
	j	B-Boy장	523	523	-	-	-	-	1면
	l	국민체육센터	8,801	8,801	1,699.88	1,699.88	2,417.46	2,417.46	
교 양 시 설	소 계		9,504	9,504	991.37	991.37	646.99	646.99	
	10	생태습지	899	899	-	-	-	-	1면
	11	관찰테크	333	333	-	-	-	-	1면
	12	도서관	6,204	6,204	991.37	991.37	646.99	646.99	
	13	수경시설	2,068	2,068	-	-	-	-	
편 의 시 설	소 계		2,549	2,549	81.54	81.54	81.54	81.54	
	O	주차장	2,288	2,288	-	-	-	-	
	P	교량	79	79	-	-	-	-	3개소
	Q	테크	182	182	-	-	-	-	3개소
	q	화장실	-	-	81.54	81.54	81.54	81.54	
관 리 시 설	소 계		53	53	33.00	33.00	30.00	30.00	
	m	휴지통	-	-	-	-	-	-	10개소
	n	경계휀스	-	-	-	-	-	-	297경간
	o	안내판	-	-	-	-	-	-	15개소
	p	관리사무소	53	53	33.00	33.00	30.00	30.00	
녹 지 및 기 타	소 계		74,164.9	74,104.9	-	-	-	-	
		녹지	74,164.9	74,104.9	-	-	-	-	감 60㎡

4.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기정	총계				4,458	15,050			
기정	소로	2	1	4	116	453	연결로	다목적구장	광장5
기정	소로	2	2	9	230	2,262	진입로	광장6	부지외곽
기정	소로	3	1	5	60	292	진입로	부지외곽	쓰레기집하장진입로
기정	소로	3	2	4	55	206	진입로	부지외곽	광장1
기정	소로	3	3	4	84	238	연결로	광장1	소로3-2
기정	소로	3	4	6	424	2,638	연결로	광장1	광장6
기정	소로	3	5	3	154	311	진입로	광장7	부지외곽
기정	소로	3	6	2	2,034	2,950	진입로	광장6	소로3-7
기정	소로	3	7	5	306	1,770	연결로	부지외곽	광장9
기정	소로	3	8	2	161	308	연결로	광장7	광장6
기정	소로	3	9	5	256	1,533	진입로	부지외곽	광장9
기정	소로	3	10	5	251	1,237	진입로	부지외곽	연결녹지교
기정	소로	3	11	5	49	248	진입로	광장3	부지외곽
기정	소로	3	12	3	30	73	진입로	부지외곽	체력단련장
기정	소로	3	13	3	61	132	진입로	부지외곽	광장2
기정	소로	3	14	3	40	121	연결로	수경시설	소로3-13
기정	소로	3	15	2	10	24	진입로	주차장	소로3-4
기정	소로	3	16	2	24	48	진입로	소로2-2	소로3-4
기정	소로	3	17	1.8	15	26	연결로	주차장	소로3-4
기정	소로	3	18	1.8	58	105	연결로	도서관	소로3-4
기정	소로	3	19	1.5	22	33	연결로	다목적구장	소로2-2
기정	소로	3	20	1.5	28	42	진입로	부지외곽	체력단련장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건 : 게재생략

6.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031-940-46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고시 제2026-264호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6. 26.

파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 칭 :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653번지 일원(1공구 준공)
- 다. 면 적 : 119,532.5㎡
- 지정 : 1공구(산업단지) 118,406.5㎡ / 2공구(도로) : 1,940㎡ 산단 내 1,126 / 산단 외 814
- 변경 : 1공구(산업단지) 118,406.5㎡ / 2공구(도로) : 1,982㎡ 산단 내 1,126 / 산단 외 856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가. 파주시 지역산업발전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나. LG 관련 산업현황 변화 및 지역 내 방송, 영상, 문화산업 관련 개발 수요 충족
- 다. 인접지역의 방송·영상·영화·애니메이션·출판 등 산업연계로 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 구축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가. 성 명 : 파주 월롱2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울길 30 (금릉동, 1층102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가. 개발기간
- 1공구(준공) : 2013년 ~ 2025년 6월 30일
- 2공구(변경) : (기정)2013년 ~ 2026년 06월 30일
- (변경)2013년 ~ 2027년 12월 31일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가. 주요 유치업종
- 지정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 변경 : 가구 제조업(C3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나. 배치계획

업 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5,311.5	100.0	
32	가구 제조업	75,311.5	100.0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가구 제조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위한 업종에 한함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 계	119,532.5 [120,346.5]	118,406.5	1,126 [1,940]	- [증)42]	-	- [증)42]	119,532.5 [120,388.5]	118,406.5	1,126 [1,982]	100.0	산단 내 면적 [산단 외 도로 포함 면적]
산업 시설용지	75,311.5	75,311.5	-	-	-	-	75,311.5	75,311.5	-	63.0 [62.6]	
지원 시설용지	4,836.4	4,836.4	-	-	-	-	4,836.4	4,836.4	-	4.0 [4.0]	
공공 시설용지	39,384.6 [40,198.6]	38,258.6	1,126 [1,940]	- [증)42]	-	- [증)42]	39,384.6 [40,240.6]	38,258.6	1,126 [1,982]	33.0 [33.4]	산단 내 면적 [산단 외 도로 포함 면적]
도 로	23,341.9 [24,155.9]	22,215.9	1,126 [1,940]	- [증)42]	-	- [증)42]	23,341.9 [24,197.9]	22,215.9	1,126 [1,982]	19.6 [20.0]	산단 내 면적 [산단 외 도로 포함 면적]
보행자 전용도로	245.4	245.4	-	-	-	-	245.4	245.4	-	0.2 [0.2]	
주차장	1,430.1	1,430.1	-	-	-	-	1,430.1	1,430.1	-	1.2 [1.2]	
저류시설	1,988.7	1,988.7	-	-	-	-	1,988.7	1,988.7	-	1.7 [1.7]	
소공원	3,253.6	3,253.6	-	-	-	-	3,253.6	3,253.6	-	2.7 [2.7]	
완충녹지	9,124.9	9,124.9	-	-	-	-	9,124.9	9,124.9	-	7.6 [7.6]	

※ []는 산업단지 외 준용도로 포함 면적 및 구성비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 총괄표(산업단지 내) (변경없음)

구 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7	2,255	23,587.3	1	756	2,080.0	3	655	10,289.3	3	844	11,218.0
종로	4	1,828	19,148.9	1	756	2,080.0	2	597	9,689.6	1	475	7,379.3
소로	3	427	4,438.4	-	-	-	1	58	599.7	2	369	3,838.7

○ 도로계획표(산업단지 내)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가정	중로	2	1	15~185	국지 도로	480	중로1-90 6	중로3-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22)	·1공구: L=426m ·2공구: L=54m
가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17	중로2-1	소공원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22)	·1공구
가정	중로	3	1	12~1325	국지 도로	475	중로1-90 6	중로2-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22)	·1공구
가정	소로	2	문산 39	95	국지 도로	58	중로2-2	주차장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22-393 호(2022.12.14)	·1공구
가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8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22)	·1공구
가정	소로	3	3	4	특수 도로	61	중로1-90 6	중로3-1	보행자 전용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22)	·1공구
가정	중로	1	906	24~27.75 (24.5~27.75)	보조간 선도로	4852 (756)	월롱면 덕은리 산7-3	파주읍 방사리 1260-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3-130호 (2013.11.14)	(·): 중로1-906호(시도11 호선중 구역에 접한 일부구 간임 ·1공구

※ ()는 구역내 연장 및 폭원임

○ 총괄표(산업단지 외) (변경)

구 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1	82	814	-	-	-	1	82	814	-	-	-
	변경	1	84	856	-	-	-	1	84	856	-	-	-
소로	기정	1	82	814	-	-	-	1	82	814	-	-	-
	변경	1	84	856	-	-	-	1	84	856	-	-	-

○ 도로계획표(산업단지 외)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문산 39	9.5	국지 도로	82	중로2-1	문산읍 내포리 265-26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22-393 호(2022.12.14.)	·2공구
변경	소로	2	문산 39	9.5	국지 도로	84	중로2-1	문산읍 내포리 265-26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22-393 호(2022.12.14.)	·2공구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주차장1	주차장	노외 주차장	내포리 1655 일원	1,430.1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2014.10.22.)	·1공구 ·준공

3)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소 계				-	9,124.9		
-	완충녹지1	녹 지	완충녹지	내포리 1653-1 일원	4,730.6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 22.)	·1공구 ·준공
-	완충녹지2	녹 지	완충녹지	내포리 1662 일원	3,201.8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 22.)	·1공구 ·준공
-	완충녹지3	녹 지	완충녹지	내포리 1660-1 일원	1,192.5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2014.10. 22.)	·1공구 ·준공

4)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소공원1	공 원	소공원	내포리 1657 일원	3,253.6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 (2014.10.22.)	·1공구 ·준공

5)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저류시설1	유수지	저류시설	내포리 1654 일원	1,988.7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 (2014.10.22.)	·1공구 ·준공

6)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지정 제조업 입주업체에서 방송·영화 관련 입주업체로 변경되어, 산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산정

구 분	수요량 (㎥/일)	비 고
합 계	665.2	
용 수	665.2	

7)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저류시설1	유수지	저류시설	내포리 1654 일원	1,988.7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 (2014.10.22.)	·1공구 ·준공

8) 오·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 지정 제조업 입주업체에서 방송·영화 관련 입주업체로 변경되어, 산업폐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생활오수와 산업폐수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오수량으로 산정

구 분	발생량(㎥/일)	비 고
합 계	598.7	
오 수	598.7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생활계 폐기물

구 분	합 계(kg/일)	종량제(kg/일)	음식물(kg/일)	재활용(kg/일)
지원시설 생활폐기물	19.1	6.5	8.2	4.4
산업시설 사업장 생활폐기물	278.2	-	50.0	228.2

○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구 분	합계(kg/일)	가연성(kg/일)	불연성(kg/일)	지정폐기물(kg/일)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2,106.7	1,755.6	351.1	-

10)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료수용량(천Nm³/년)	비 고
합 계	5,603.6	
산 업 시 설	4,990.3	
지 원 시 설	613.3	

1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간전력소요량(MWh/년)	비 고
합 계	10,267.5	
산 업 시 설	9,948.1	
지 원 시 설	319.4	

12)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합 계	41	
산 업 시 설	30	
지 원 시 설	11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체와 지원기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육성

나. 산업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용지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획 입지의 관리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별첨)(**변경**)

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①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653 일원	119,532.5	·1공구 준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9,532.5	100.0	
공업지역	소 계	118,745.2	99.3	
	일반공업지역	111,812.8	93.5	
	준공업지역	6,932.4	5.8	
농림지역		787.3	0.7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총괄표(산업단지 내) (변경없음)

구 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7	2,255	23,587.3	1	756	2,080.0	3	655	10,289.3	3	844	11,218.0
중로	4	1,828	19,148.9	1	756	2,080.0	2	597	9,689.6	1	475	7,379.3
소로	3	427	4,438.4	-	-		1	58	599.7	2	369	3,838.7

○ 도로계획표(산업단지 내)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18.5	국지 도로	480	중로1-906	중로3-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2014.10.22.)	·1공구 L=426m ·2공구 L=54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17	중로2-1	소공원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2014.10.22.)	·1공구
기정	중로	3	1	12~13.25	국지 도로	475	중로1-906	중로2-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2014.10.22.)	·1공구
기정	소로	2	문산 38	9.5	국지 도로	58	중로2-2	주차장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22-393호(2022.12.14.)	·1공구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8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2014.10.22.)	·1공구
기정	소로	3	3	4	특수 도로	61	중로1-906	중로3-1	보행자 전용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2014.10.22.)	·1공구
기정	중로	1	906	24~27.75(24.5~27.75)	보조 간선 도로	4,852(756)	월릉면 덕은리 산17-3	파주읍 봉서리 1260-1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3-130호(2013.11.4)	·() : 중로 1-906호선(시도11호선)중 구역에 접한 일 부구간임 ·1공구

※ ()는 구역내 연장 및 폭원임

○ 총괄표(산업단지 외) (변경)

구 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기정	1	82	814	-	-	-	1	82	814	-	-	-
	변경	1	84	856	-	-	-	1	84	856	-	-	-
소로	기정	1	82	814	-	-	-	1	82	814	-	-	-
	변경	1	84	856	-	-	-	1	84	856	-	-	-

○ 도로계획표(산업단지 외)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문산 39	9.5	국지 도로	82	중로2-1	문산읍 내포리 265-26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22-393호(2022.12.14.)	·2공구
변경	소로	2	문산 39	9.5	국지 도로	84	중로2-1	문산읍 내포리 265-26	일반 도로	-	파주시고시 제2022-393호(2022.12.14.)	·2공구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주차장1	주차장	노외 주차장	내포리 1655 일원	1,430.1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 (2014.10.22.)	·1공구 ·준공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소 계				-	9,124.9		
-	완충녹지1	녹 지	완충녹지	내포리 ,1653-1 일원	4,730.6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 (2014.10.22.)	·1공구 ·준공
-	완충녹지2	녹 지	완충녹지	내포리 1662 일원	3,201.8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 (2014.10.22.)	·1공구 ·준공
-	완충녹지3	녹 지	완충녹지	내포리 1660-1 일원	1,192.5	파주시고시 제2014-142 호 (2014.10.22.)	·1공구 ·준공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소공원1	공 원	소공원	내포리 1657 일원	3,253.6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 (2014.10.22.)	·1공구 ·준공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 저류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저류시설1	유수지	저류시설	내포리 1654 일원	1,988.7	파주시고시 제2014-142호 (2014.10.22.)	·1공구 ·준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총 계		81,578.0	-	81,578.0	
소 계		75,311.5	-	75,311.5	
산업1BL	1	40,831.1	-1	36,814.8	·1공구
			-2	4,016.3	·1공구
산업2BL	2	18,250.9	-1	7,772.6	·1공구
			-2	4,938.3	·공동개발 ·1공구
			-3	5,540.0	
산업3BL	3	16,229.5	-1	6,410.0	·1공구
			-2	9,819.5	·1공구
소 계		4,836.4	-	4,836.4	
지원1BL	1	4,836.4	-1	432.5	·1공구
			-2	658.7	·1공구
			-3	3,745.2	·1공구
소 계		1,430.1	-	1,430.1	
주차장1BL	1	1,430.1	-1	1,430.1	·1공구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가 구 번 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B L	-1~2	용도	허 용 도	- o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 급업(5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o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와 제14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C16)
			불 허 용 도	o 하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o 70% 이하
		용 적 륜		o 200% 이하
		높 이		o 5층 이하, 30m 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배 치		- o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 o 1BL 중앙부의 건축물 배치는 세로축(남북방향)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동간 거리는 13m이상을 확보(부대시설 제외) - o 산업1-1 내 건축계획고 단차로 인한 단절구간 발생 시 주차장, 지원시설, 소공원 이용자의 보행 통행을 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형 태		o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계획 권장
		색 채		- o 안정감 있고 주변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 계획과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색채계획 권장 - o 주조색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권장 - o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 o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 o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지 권장
		건 축 선		- o 건축한계선 - 종로2-2호선 경계부 : 5.0m - 종로1-906호선, 종로3-1호선, 소로2-문산38호선, 소로3-3호선 경계부 : 1.5m

가 구 번 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2B L	-1~3	용도	허 용 용 도	-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 급업(5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o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와 제14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C16)
			불 허 용 도	o 하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o 70% 이하
		용 적 률		o 200% 이하
		높 이		o 5층 이하, 30m 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배 치		o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형 태		o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계획 권장
		색 채		- o 안정감 있고 주변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 계획과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색체계획 권장 - o 주조색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권장 - o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 o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 o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지 권장
		건 축 선		- o 건축한계선 - 종로3-1호선 경계부 : 1.5m~5.0m - 소로3-1호선 경계부 : 1.5m

가 구 번 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3B L	-1~-2	용도	허 용 도	-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시설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 급업(5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o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와 제14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C16)
			불 허 용 도	o 하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o 70% 이하
		용 적 률		o 200% 이하
		높 이		o 5층 이하, 30m 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배 치		o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형 태		o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계획 권장
		색 채		- o 안정감 있고 주변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 계획과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색체계획 권장 - o 주조색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권장 - o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 o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 o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지 권장
		건 축 선		- o 건축한계선 - 소로3-3호선 경계부 : 8.0m - 중로1-906호선, 중로3-1호선 경계부 : 1.5m

○ 지원시설용지

가 구 번 호	위 치 (회 지)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BL	-1~2	용 도	허 용 도	○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아래 건축물 용도에 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가목의 아동관련시설에 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30m 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배 치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계획 권장
		색 채		○ 안정감 있고 주변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 계획과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색채계획 권장 ○ 주조색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권장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지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종로2-2호선 경계부 : 5.0m - 종로2-1호선 경계부 : 1.5m

가 구 번 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BL	-3	용 도	허 용 도	○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아래 건축물 용도에 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가목의 아동관련시설에 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에 한정)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30m 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에 한정)에 한정하여 10층 이하, 30m 이하 허용
		배 치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계획 권장
		색 채		○ 안정감 있고 주변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 계획과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색채계획 권장 ○ 주조색은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권장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지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 경계부 : 5.0m - 중로1-906호선, 중로2-1호선 경계부 : 1.5m

○ 공공시설용지

가 구 번 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1BL	-1	용 도	허 용 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따른 부대 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2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획지 번호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산업1BL	-1~2	차량출입 허용구간	-	o 차량출입구는 중로3-1호선변, 중로2-2호선변, 소로2-문산38호선 변의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 o 차량출입허용구간 내 산업2BL, 산업3BL의 차량출입구가 마주보도록 설치 권 고	도면 참조
산업2BL	-1~3	차량출입 불허구간	-	o 산업단지 주진출입도로인 시도11호선(중로1-906호선)변 전면 차량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 o 소로3-1호선, 소로3-3호선(보행자전용도로)과 접한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 o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산업3BL	-1~2				

○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획지 번호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지원1BL	-1~3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구는 중로2-2호선변의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	도면 참조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산업단지 주진출입도로인 시도11호선(중로1-906호선)변 전면 차량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 -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획지 번호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 1BL	-1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구는 소로2-문산38호선변의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	도면 참조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 공공보행통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소공원1	단지 내외 보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B=4m, L=66m	도면 참조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16.7, 환경부」에 따른 공간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를 적용하여 설치하고, 대지안의 조경시 공공조경을 포함하여 생태(조경) 면적을 산정 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파주시 건축조례」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 이상인 15% 이상의 조경면적을 대지(산업시설용지, 자원시설용지) 내 확보하도록 함 ○ 산업단지 전체 목표생태면적률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상 21.2%이고, 금회 변경사항 반영 시 25.1%임 ○ 건축계획 시 조경녹지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목표생태면적률을 준수하여야 함

○ 목표생태면적률 산정

구 분		면 적(㎡)	면적비율(%)	가중치	적용면적(㎡)	생태면적률(%)	비 고
산업시설용지		75,311.5	63.0	1.0	11,296.7	9.5	· 자연지반 녹지
자원시설용지		4,836.4	4.0	1.0	725.5	0.6	· 자연지반 녹지
도 로	도 로	19,452.1	16.3	0.0	0.0	0.0	· 포장면
	도로사면부지	3,889.8	3.3	1.0	3,889.8	3.3	· 자연지반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245.4	0.2	0.0	0.0	0.0	· 포장면
주차장		1,430.1	1.2	0.2	286.0	0.2	· 틈새부분포장
저류시설		1,988.7	1.7	0.7	1,392.1	1.2	· 수공간(차수)
소공원		3,253.6	2.7	1.0	3,253.6	2.7	· 자연지반 녹지
완충녹지		9,124.9	7.6	1.0	9,124.9	7.6	· 자연지반 녹지
합 계		119,532.5	100.0		29,968.6	25.1	

사.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원조성계획(변경)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3,253.60	-	-	
시 설 면 적	649.73	-	-	시설율 19.96%
도로 또는 광장	649.73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흥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2,603.87			

○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3,253.60			
시 설 소 계			649.73			시설율 19.96%
도로 또는 광장	소 계		649.73			
	광장(소계)		114.50			
	도로(소계)		535.23			
	1	소로 1	80.00			
	2	소로 2	12.10			
	3	소로 3	22.18			
	4	소로 4	22.20			
	5	소로 5	129.85			
	6	소로 6	121.50			
	7	소로 7	54.00			
	8	소로 8	30.10			
	9	소로 9	63.30			
	소계		535.23			
조경시설	①	앞음벽				1EA
휴양시설	②	파고라				2EA
	③	벤 치				7EA
운동시설	④	운동기구				5EA
관리시설	⑤	안내판				1EA
	⑥	블라드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2,603.87			
		녹 지	2,603.87			

○ 도로결정(변경)조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기정	총계					535.23			
기정	소로	3	1	4.0	19.9	80.00	진입로	서북측 경계	소 3-6
기정	소로	3	2	7.0~6.3	3.4	12.10	진입로	북측 경계	소 3-6
기정	소로	3	3	2.0~4.0	8.4	22.18	진입계단	동측 경계	소 3-6
기정	소로	3	4	3.0	6.0	22.20	진입계단	남측 경계	소 3-5
기정	소로	3	5	4.0~5.0	40.6	129.85	진입로	서측 경계	가
기정	소로	3	6	1.5~4.1	80.4	121.50	연결로	소 3-1	소 3-5
기정	소로	3	7	5.9~4.0	13.3	54.00	연결로	소 3-6	가
기정	소로	3	8	1.0	30.1	30.10	연결로	가	가
기정	소로	3	9	1.5	30.0	63.30	경사로	동측 경계	소로 3-3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가. 관계도서는 파주시 기업지원과(☎ 031-940-5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관계도서 게재생략)

11.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도면 게재 생략

-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변경)

가. 산업단지(변경없음)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기정	내포리	265	- 59	답 75	75	신한자산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 동대로 416, 13층(대 치동, 케이티엔지타 워)					2공구
2	기정	내포리	265	- 71	답 14	14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3	기정	내포리	265	- 72	답32	32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4	기정	내포리	265	- 73	도 102	102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5	기정	내포리	265	- 74	구 71	71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6	기정	내포리	265	- 100	답 2	2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 대로9길 20 (태평로2 가)					2공구
7	기정	내포리	265	- 101	도 85	85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8	기정	내포리	265	- 102	구 79	79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9	기정	내포리	265	- 103	구 1	1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10	기정	내포리	266	- 4	임 553	55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 대로9길 20 (태평로2 가)					2공구
11	기정	내포리	266	- 5	임 112	112	과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 산단지개발로길 30, 1층102호(금 릉동)					2공구

※ 준공이 완료된 1공구는 제외

나. 산업단지 외 준용도로(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비 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공유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변경	내포리	265 - 26	답	317	42	박강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9, 72동 205호 (반포동, 반포아파트)		박정배	서울 용산구 이촌로65가길 51, 215동 1103호(이촌동, 한가람아파트)	가처분	2공구 추가 편입
2	기정	내포리	265 - 64	도	1	1	국토교통부	국					2공구
3	기정	내포리	265 - 95	답	370	370	파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파주시 쇠재개울길 30, 1층 102호 (금릉동)					2공구
4	기정	내포리	265 - 97	전	203	203	파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파주시 쇠재개울길 30, 1층 102호 (금릉동)					2공구
5	변경	내포리	265 - 98	답	24	24	파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파주시 쇠재개울길 30, 1층 102호 (금릉동)					2공구
6	기정	내포리	265 - 99	전	216	216	파주월롱2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파주시 쇠재개울길 30, 1층 102호 (금릉동)					2공구

2. 지장물조서(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지장물건 없음

나. 산업단지 외 준용도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지분	
합 계											
1	기정	내포리	265-98	포장도로	콘크리트	㎡	24	파주월롱2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파주시 쇠재개울길 30, 1층 102호 (금릉동)		2공구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파주시 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동조례 제10조(공고), 제12조(공인의 폐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인명	신조사유	사용관리부서 (관리자)	신조일	비고
파주시AI정책관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AI정책관 부 : AI정보기획팀장	2026. 7. 1.	
파주시AI정책관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AI정책관 부 : AI정보기획팀장	2026. 7. 1.	

공인명	폐기사유	사용관리부서 (관리자)	폐기일	비고
파주시정보통신과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정보통신과 부 : 정보기획팀장	2026. 7. 1.	
파주시정보통신과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	정 : 정보통신과 부 : 정보기획팀장	2026. 7. 1.	

2026년 6월 26일

파 주 시 장

공 인 의 모 형

1. 공인신조명 : 파주시AI정책관분임물품출납원인 등 2개
2. 공인폐기명 : 파주시정보통신과분임물품출납원인 등 2개
3. 공인 신조(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4. 공인의 사용일 : 2026. 7. 1.
5.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 인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규 격(cm)	
파주시AI정책관분임물품출납원인		1.8 × 1.8	AI정책관
파주시AI정책관일상경비출납원인		1.8 × 1.8	AI정책관

6.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폐 기 공 인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규 격(cm)	
파주시정보통신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 x 1.8	정보통신과
파주시정보통신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 x 1.8	정보통신과